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기등 적출 허용 연령 19세 미만으로 상향〉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356호)

2024. 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장기등 적출 허용 연령 19세 미만으로 상향	2

I. 개요

1.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035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12.

(3) 회 부 일 : 2024. 6.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하에 16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족 간 장기등 이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과 사회 전반의 유교적 풍토로 인해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보호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미성년자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WHO에서는 미성년자의 자율성과 기증 동의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로 미성년자의 세포, 조직, 장기 적출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 영국 등에서도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살아있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장기 적출·이식 허용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기등 적출 허용 연령 19세 미만으로 상향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친족간 장기등 이식 허용 규정을 삭제하고, 장기등 생체 이식 허용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미성년자의 장기등 적출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장기등의 적출·이식의 금지 등) ①·② (생략)	제11조(장기등의 적출·이식의 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장기등은 적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말초혈과 골수에 한정하여 적출할 수 있다.	③ ----- ----- -----. ----- -----.
1. 16세 미만인 사람	1. 19세-----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u>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말초혈과 골수는 제외한다)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가 아니면 적출할 수 없다.</u>	<u><삭 제></u>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장기등의 적출 요건) ①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등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다. 다만,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과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말초혈 또는 골수를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본인과 그 부모(부모가 없고 형제자매에게 말초혈 또는 골수를 이식하기 위하여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4항에 따른 16세 이상의 장기등기증자와 20세 미만인 사람 중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경우 외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미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략)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16세 이상

제22조(장기등의 적출 요건) ① -----

-----19

세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9세-----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벌칙) ①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u>인 미성년자의 장기등을 적출한 자</u> 5. ~ 9. (생 략) ②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인 사람의 장기등¹⁾은 적출을 금지하되, 말초혈과 골수에 한정하여 적출할 수 있도록 하고,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에는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장기기증 관련 업무지침²⁾에서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참고자료1 참조).
- 지난 5년간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건수를 살펴보면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등을 기증한 건수는 265건으로, 이 중 말초혈, 골수를 제외한 생체장기이식은 153건임.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골수·안구

다.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 업무안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24.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미성년자의 장기별 기증 현황〉

(단위: 명)

년도	구 분		총계	16세 미만			16세이상-19세미만					
				계	직계비속	형제자매	계	직계비속	형제자매	방계혈족	인척	비혈연
2019	계		81	33	7	26	48	35	12	1		
	장기	신장										
		간장	30				30	28	1	1		
	조혈모	골수	5	5		5						
말초혈		46	28	7	21	18	7	11				
2020	계		86	27	10	17	59	49	9	1		
	장기	신장	1				1	1				
		간장	41				41	39	1	1		
	조혈모	골수	3	2		2	1		1			
말초혈		41	25	10	15	16	9	7				
2021	계		89	26	7	19	63	41	19		1	2
	장기	신장										
		간장	30				30	28	1		1	
	조혈모	골수	4	3		3	1		1			
말초혈		55	23	7	16	32	13	17			2	
2022	계		81	33	13	20	48	36	8		1	3
	장기	신장										
		간장	27				27	26			1	
	조혈모	골수	6	6		6						
말초혈		48	27	13	14	21	10	8			3	
2023	계		72	25	17	8	47	27	18	1		1
	장기	신장										
		간장	25				25	24		1		
	조혈모	골수										
말초혈		47	25	17	8	22	3	18			1	
합계			409	144	54	90	265	188	66	3	2	6

* 자료: 보건복지부

□ 이와 관련하여, 가족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미성년자의 장기 이식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따라, 미성년자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개정안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미성년자의 골수 및 말초

혈 이외의 장기 적출을 금지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임.

- 현재 WHO(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영국, EU 등에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생체 장기 기증을 성인 기증자가 없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해외 사례는 참고자료2 참조),

미성년자의 경우 정신적 성숙 과정에 있으며 장기등 이식 수혜자가 대부분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이라는 특성상 완전한 자기결정 능력에 근거한 자율적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장기 중 간장의 경우 응급 이식이 필요한 경우³⁾가 발생하나 뇌사자 기증이 원활하지 않아 생체 이식이 주로 시행되고 있어 미성년자 기증 조항 삭제 시 장기 수급이 더욱 어려워져서 이식대기자 사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일률적으로 미성년자 장기 이식을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측면과 과잉금지 원칙 위배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미성년자 장기기증의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미성년자 생체 장기 기증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이나 미성년자 생존 기증자의 건강 관련 관리시스템 구축 등 현행법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3) 간은 다른 장기와 달리 보조장치가 없어 간 부전 발생 시 이식을 못하면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미성년자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안 취지에 공감하나,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가족간 등 장기 적출을 허용하는 규정 삭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간장의 경우 응급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나 뇌사자 기증 수급이 어려워 생체이식이 주로 시행되는바, 동 조항 삭제 시 장기이식 대기자 사망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 성인 기증자가 없는 경우, 뇌사기증자로부터 적절한 시기 또는 효과적 이식이 어려운 경우 등 담당의사 판단하에 제한적 허용 검토 필요

□ (법무부) 입법정책적 결정이나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장기 등의 적출·이식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국제 지침 및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예외적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 정도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대한이식학회)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동의함. 다만, 미성년자 장기기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기를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장기이식 대기자 사망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 (대한의사협회) 동 개정안은 선의로 장기를 기증하려는 미성년자의 의향을 차단할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하며, 18세 이하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존중·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미성년자 생존 기증자의 건강 관련 관리시스템 구축 등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우선 보완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9

2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 장기이식법 제11조, 제22조

가. 16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만 기증할 수 있다.

나. 부모 2인의 동의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모 중 1명이 행방불명,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부모 중 나머지 1명과 가족 순서에 따른 선 순위자 1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은 최후의 순위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식 대상자에게 다른 의학적 치료 방법이나 기회가 전혀 없는 경우, 성인 기증이나 뇌사자 기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미성년자를 잠재적 기증자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최후의 기증자로 고려되어야 한다.**

미성년 기증자의 '최후의 순위' 확인

-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이식 대상자에게 다른 대안적 기증자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승인
- (이식 대상자의) **배우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의 순서로 기증 가능 여부 및 불가능 사유 확인
- 위 순위의 가족이 기증 부적합 등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는 의학적인 입증 자료, 사유서 등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

라. 기증자가 미성년자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미성년 기증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이식 대상자의 의학적 사유를 진단서(소견서)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참고2]	미성년자 장기기증 법적 승인 자격 기준 해외사례
--------------	-----------------------------------

WHO 지침	- 각국의 법률에 의해 규정된 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식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있는 법적 미성년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해서는 안됨 - 주요 예외사항: 성인 기증자가 없는 경우, 일란성쌍둥이 사이의 신장 이식
암스테르담 포럼	- <u>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생체신장기증자가 되어서는 안됨</u>
미국 UNOS	- 기증자 연령이 <u>18세 미만인 경우 금지</u>
미국 NKF/AST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생체 기증하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함 - 허용할 수 있는 예외 조건: 일란성쌍둥이, 기증자의 수술 위험이 매우 낮을 때, 살아있는 성인 잠재 기증자가 없고, 뇌사 기증자로부터 적절한 시기 또는 효과적 이식이 어려운 경우
영국 BTS	- <u>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생체 기증자로 아주 극히 드문 상황에서만 고려될 수 있고</u>, Children Act 1989에 따르면 미성년자 생존 기증(고형장기)은 법원 승인이 있어야 함
캐나다 CST	- <u>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부터의 생존 장기 기증은 실시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권장</u> - 극히 드문 예외의 경우, 반드시 기증자 또는 수혜자 치료팀과 독립적인 기증자 옹호자, 지역 윤리 프로그램과의 협의, 독립적 심리학자 또는 정신과 의사에 의한 심리 사회적 평가, 소아청소년의학과, 법률고문을 동반한 평가와 동의 절차 하에 허용
스페인 SEN OUT	- <u>기증의 최소 연령은 18세</u> - 어린 기증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인지의 평가를 중요하게 간주함.
유럽 EAU	- <u>18세 미만의 연령은 절대 금지 사항</u>